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수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0년 9월 6일
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2010년 5월 2일자로 최초 효력을 발생한 본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중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초 간이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9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 (전화: 02-2003-9000(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 예정 기간
3. 모집 예정 금액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명칭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6720)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I	종류 F	종류 N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6721	26722	26723	26724	26725	26726

2. 모집 예정 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 60,000,000,000,000좌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 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나.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인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1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피델리티 펀드-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 (Fidelity Fund - Emerging Market Debt Fund) (“피투자집합투자기구”)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1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3)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실물자산·통화나 채권·실물자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장내파생상품”)
4) 장외파생상품		상기 제3)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5) 금전차입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금전의 차입”).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p>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명칭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 (Fidelity Funds Emerging Market Debt Fund) - 종류: A-ACC-USD Class
펀드설립일	- 2006년 1월 23일
펀드 규모	- 미화 397백만달러 (2010년 3월 31일 현재)
운용전문인력	- John Carlson
운용회사	- FIL Fund Management Limited, Bermuda
투자목적	- 글로벌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 이머징마켓 발행인들의 현지시장 채무증서, 채권, 주식, 회사채 및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러시아 포함) 및 중동 지역에 주로 투자하나, 위 지역들에 한정되지 아니함
주요투자위험	-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 증권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클 수 있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미달러이머징채권펀드(Fidelity Funds-Emerging Market Debt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미국은행그룹인 JP Morgan이 작성하여 발표한 글로벌 신흥시장 내 거래되는 대외 채권 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지수에 대해 한국원화로 헤지한 지수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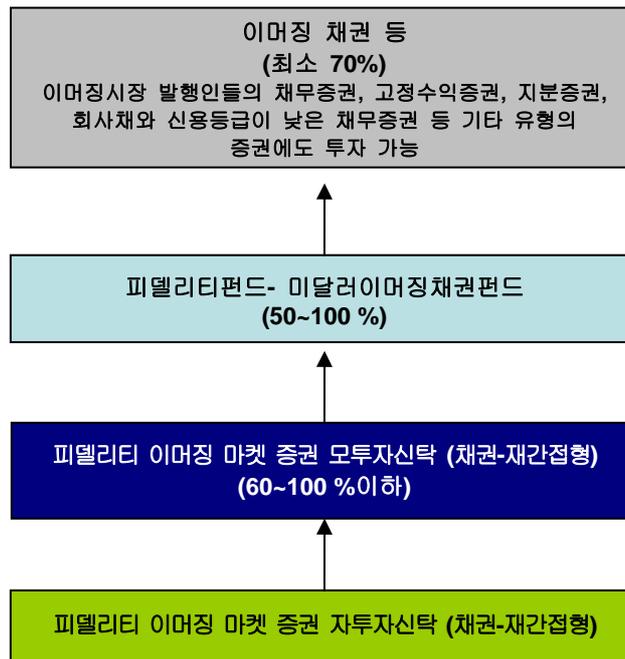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 미달리어머징채권 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이머징시장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관

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신흥시장의 재무상태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그 결과 신흥시장 국가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성장 원동력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연령이 젊고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신흥시장 채권에 대하여 투자위험이 높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던 투자자들의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머징마켓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머징마켓 채권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이지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주식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등급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 적격 등급(BBB-이상)의 국내 채권 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국공채, MMF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0년 3월 31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1971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11개	23,713억원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통화간의 헤지거래(예. 표시통화인 달러화 대비 피투자 펀드가 보유하는 이종통화에 대한 선도환 거래)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자산운용회사에서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헤지거래는 피투자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펀드코드: 26721)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 (펀드코드: 26722)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e (펀드코드: 26723)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I (펀드코드: 26724)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종류 F (펀드코드: 26725)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종류 N (펀드코드: 26726)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해외 계열사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종류 A	종류 C	종류C-e	종류I	종류 F	종류 N
선취판매수수료	0.7% 이하	-	-	-	-	-
환매수수료 ¹⁾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I	종류F	종류N	
집합투자업자보수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650	1.000	0.850	0.300	0.050	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기타 비용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0.835	1.185	1.035	0.485	0.235	0.185	
총 보수·비용 (피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485	1.835	1.685	1.135	0.885	0.835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I	종류F	종류N	
증권거래비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채권형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 총 보수·비용비율(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기타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포함.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는 연 0.65%로 예상하였으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을 모집합투자기구 투자비율에 따라 나눈 값과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 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0,648	545,965	904,627	1,970,467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8,063	592,868	1,039,165	2,365,433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2,690	544,405	954,220	2,172,074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6,322	366,706	642,754	1,463,088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701	285,934	501,178	1,140,822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576	269,779	472,863	1,076,369

주 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 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모두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과세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3)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 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10 년 1 월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